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
- 지자체용 -

1-3판

2022. 02. 21.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요 개정사항]

[illegible]

〈 목 차 〉

1. 개요	1
1. 검사 원리	1
2. 검사 대상	1
3. 검사 원칙	1
4. 검사 절차	2
2. 운영 관리	3
1. 기본 수칙	3
2. 시설 요건	4
3. 감염 관리	4
3. 검사 방법	5
1. 검사 접수	5
2. 검사안내 및 관리	5
3. 검체채취 및 검사수행	5
4. 결과 확인 및 보고	6
5. 자택 검사	7
4. 후속 조치	8
1.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신청서	8
2.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8
3.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8
5. 자주 묻는 질문(FAQ)	9
1. 선별검사소·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관련 질문	9
2. 검사시행 관련 질문	12

〈 서식 · 붙임 목차 〉

서식 1.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신청서	23
서식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보건소용)	24
서식 3.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관리 대장(보건소용)	25
서식 4.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실적 제출 양식(제출용)	26
붙임 1.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안내(포스터)	27
붙임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포스터)	28
붙임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배포용)	29
참고 1. 선별진료소 PCR검사 절차	30
참고 2.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운영 사례	33

1

개요

※ 동 지침은 '22.1.29.부터 운영되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을 위해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기본 수칙에 따른 세부사항(검사실 설치, 지원인력 구성 등)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 가능

1] 검사 원리

- (원리) 개인이 직접 채취한 비강도말물(콧구멍 안쪽 표면을 면봉으로 문질러 채취)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법

2] 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 우선순위 검사 대상 및 PCR 검사절차는 '참고 1' 참조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1.26. 15시 발급 시, 1.27. 24시까지 유효

3] 검사 원칙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양성인 경우 유전자검사(PCR)를 반드시 시행
 -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경우,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이더라도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외의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반드시 PCR검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허가된 검체 외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 비특이적 반응에 의한 양성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해당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음

4 검사절차

- (접수) 검사대상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한 전자문진표를 작성하고, 검사관리자는 검사 안내서와 검사 키트를 지급
- (검사) 별도로 마련된 검사공간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뒤,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확인 시점까지 대기
- (결과확인) 검사관리자가 검사 결과를 확인
- (사후조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PCR 검사를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음성 시에는 귀가 또는 방역패스 필요 시 음성확인서 발급(서식 2)

※ 모든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방역패스 목적이 아닌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검사희망자에게 검사키트 1회분을 지급*하여 자택에서 스스로 검사 가능

※ 방역패스용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관리자의 감독하에 시행

< 검사 절차 >

절 차	내 용	검 사관 리 자	검 사대 상 자
접 수	검사대상자 확인	○	
↓			
신청서 작성	전자문진표 작성		○
↓			
안내	신속항원검사 안내 (동선, 검사요령, 주의사항 등)	○	
↓			
검사 시행	신속항원검사 수행		○
↓			
결과 확인	검사결과 확인	○	
↓			
사후조치	양성 시	소독 · 환기 PCR 검사 안내	PCR 검사 후 귀가 (비인두도말 채취)
	음성 시	음성확인서 발급 (요청 시)	귀가

1 기본 수칙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배너, 포스터 등) 부착(붙임 1, 2)
-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 사용
 - * 반드시 자가검사(Home Test)용 제품임을 확인
 - * 허가제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예방 수칙 준수 및 신속항원검사 절차 숙지 필요
 - 신속항원검사 안내 등을 담당하는 직원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사전에 제공하여야 함
 - * 관리자는 검사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 필요
- 신속항원검사 시행팀 별도 구성 및 업무 분장 필요

<업무분장 예시>

구분		업무
접수 및 안내		• 검사 대상자 분류 • 전자문진표 작성 및 검사 동선 안내 • 신속항원검사 안내서 및 검사 키트 지급
검사 관리	검사 지원	• 검체 채취 방법, 검사방법, 주의사항 등 안내 및 감독 • 검사 단독 수행이 어려운 경우, 검사 보조
	대기자 관리	• 거리두기 유지, 대기 시간 준수 등 관리
	결과 확인	• 검사 결과 판독, 조치(귀가 또는 PCR 검사 연계), 기록
행정 지원	검사실적 관리	• 일일 검사건수 및 양성자 수 집계·보고
	음성확인서 발급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필요 시)

- 신속항원검사 시행 구역은 기존 유전자검사(PCR)를 위한 검체 채취 구역과 분리하여 운영

2 시설 요건

- (공간 분리)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내 유전자검사(PCR)를 위한 구역과 분리된 별도 구역에서 운영하고, ①검사 전 대기 공간, ②검체채취 및 검사수행 공간, ③검사 결과 판독 시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검체채취 공간은 자연환기가 잘되고 타 구역과 분리된 독립 공간 필요

- (동선 관리) 검사대상자의 이동 동선을 검사흐름(검사 전→검체채취 및 검사→검사 결과 확인)에 따라 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양성자가 일반 검사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운영 사례(참고 2) 참고

3 감염 관리

- (안내) 검사대상자는 검체 채취 시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 (안전관리) 검사관리자는 KF94 등급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 및 손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 검사 안내 및 접수자는 호흡기 보호구, 장갑, 비닐 가운만 착용 가능

- (소독 및 환기) 검사 공간 환기 및 검사 테이블 청소·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 시에는 검사테이블, 입구 손잡이 등 검사 양성자와 접촉이 있는 부위를 추가 소독 및 환기

- (폐기물 관리) 사용한 면봉, 검사키트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

1 검사접수

- (검사대상자) 모바일 접속(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covid19.kdca.go.kr)을 통한 전자문진표 작성
 -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검사 이유에 '방역패스발급' 체크
 - * 전자문진표 사용이 어려운 경우(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수기로 검사신청서(서식1) 작성 가능
- (검사관리자) 검사 안내서와 검사 키트 지급
 - * 우선순위 대상자인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PCR검사를 받도록 안내 (참고 1)

2 검사안내 및 관리

- 검사대상자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문 등 게시
 - 검사 동선, 검체채취 방법, 검사순서, 주의사항 등
 - * 제품별 검사 안내서 및 동영상(별도 제공) 활용 가능
- 관리자는 안내에 따라 올바르게 검사가 수행되도록 관찰 및 감독
 - 검체 채취, 테스트기 조작, 검체 추출액 처리, 점적량 등
- 검사 단독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검사를 보조하도록 하거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직원이 검체 채취, 검사 과정 등을 지원
- 올바른 검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검사 무효 처리

3 검체채취 및 검사수행

- ※ 신속항원검사의 일반적인 사용법으로, 제품에 따라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별 사용설명서를 준수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검체종류) 비강도말물

○ (검체채취) 제공되는 면봉으로 콧속 안쪽 벽면을 좌우 각 5회 이상 문질러 채취

○ (검사방법)

- ①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검체추출 용기에 넣고 10회가량 회전하여 혼합
- ② 면봉을 쥐어 짜내며 용기에서 제거하고 용기 뚜껑을 닫음
- ③ 검체추출 용기를 부드럽게 눌러, 검체 추출액을 테스트기 검체 점적 부위에 3~4 방울 떨어뜨림

④ 검사 관리자 안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일정 시간(15~30분) 대기

* 제품별로 판독 시간에 차이 있음

【 주의사항 】

- 신속항원검사 제품에 검체 외 이물질 투입 금지
- 신속항원검사 제품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검사반응 시간 엄수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현장 대기 필요
- 검사결과 양성 시, 유전자검사(PCR) 필수(비인두도말검체 채취)
 - ※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 귀가 시 대중교통 이용 자제

4 결과확인 및 보고

※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 시행

- (결과확인) 관리자가 검사 결과 판정(제품별 사용설명서 참고)
 - 대조선(C라인)과 시험선(T라인) 모두(2줄) 나타난 경우 **양성으로 판정** 하고, PCR 검사 시행 안내
 - 대조선(C라인)만 나타난 경우(1줄) **음성으로 판정**
 - 대조선(C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하고 재검사 권고**



- **(관리·보고)** 관리자는 검사 결과를 정리하여 관리 및 보고
 - 당일 신속항원검사 관리 대장(서식 3)을 작성하여 자체 별도 보관
 - 전일 검사실적을 작성하여(서식 4) 시·도 담당자에게 제출 → 시·도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익일 낮 12시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담당자에게 제출

5 자택 검사

- **(원칙)** 모든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현장에서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 키트를 받아 자택 등에서 검사 실시도 가능
 - *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된 1인에 한해 검사키트 1회분 지급
- **(방법)** 신청서 확인 후, 검사키트와 안내서(붙임 3) 지급
- **(관리)** 보건소 담당자가 지급 현황 관리 및 보고
 - 관리대장(서식 3)은 현장검사자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지급하였음을 별도 표기
 - 검사결과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4

후속 조치

1 원칙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
 - PCR 검사 접수시 전자문진표 항목의 검사이유에 '**RAT 양성**'으로 표시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의 PCR 검사는 개별 검사로 의뢰**(취합 검사 불가)
- 방역수칙은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

2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PCR 검사) 검사대상자가 신속하게 유전자검사(PCR)를 받도록 안내
 - 전자문진표 접수('RAT 양성' 표시) 및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
 - 검체 채취 후 귀가,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자택 대기 안내

【주의사항】

-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

- (소독·환기) 검사 결과 양성자가 이용한 공간을 소독 및 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http://ncov.mohw.go.kr>) 참고

- (확진자 조치) 신속항원검사 양성 단계에서는 별도 신고 불필요, 추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환자 신고 및 관리 이행

3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반복 검사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함을 안내
- 방역패스 목적으로 검사한 경우는 음성확인서(문자 통지서 또는 종이 증명서) 발급

* 종이 증명서의 보건소장 인 또는 서명은 담당자 서명으로 대체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1 선별검사소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관련 질문

1.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어떻게 검사하나요?

- ☐ 검사 희망자가 선별진료소 방문 시, 접수 담당자는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검사 희망자의 우선순위 대상 해당 여부 확인합니다.
- ☐ 우선순위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실시합니다.
 - * 비인두도말검체 채취 → 검사의뢰
- ☐ 우선순위 대상 외 검사회망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 ☐ 그 외 세부사항은 '(참고 1) 선별진료소 우선순위 PCR검사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사실적은 어떻게 보고 하는건지요?

- ☐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담당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적을 지침의 검사실적 제출용 양식(서식4)으로 작성하여 각 17개 시·도 담당자에게 익일 오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시·도 담당자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담당자(홍성희 보건연구사, 온나라메일 혹은 h22h22h22@korea.kr)에게 익일 낮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 개편 후 수기 검사실적 보고 종료 예정
- ☐ 반드시 양식에 맞추어 보고하셔야 하며, 음성확인서(방역패스) 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검사회망자' 항목으로 실적을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사정 상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어떻게 접수 및 집계하나요?

- ☐ 모든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현장 상황에 따라 검사희망자에게 검사키트 1회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키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현장 검사와 동일하게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 후 검사키트 1회 분량을 지급합니다.
 - * 검사이유는 '본인 희망'에 체크, 결과는 '지급' 체크
- ☐ 관리 대장에는 검사결과는 작성하지 않고, 비고란에 '지급'으로 작성하고,
- ☐ 실적 양식에는 지급 건수란에 당일 총 지급 건수를 작성합니다.

4. 드라이브 스루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 ☐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는 대기가 어려우므로, PCR 검사만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인용검사키트를 배포하는 등 각 선별진료소의 상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 ☐ 현장에서 관리자의 감독하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가 어려우므로,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5.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란 어느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의 종사자 등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 곳으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기관에 한함) 종사자
 -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74('22.1.20) 참조
 - ** 선제검사 대상기관인 노인일자리기관, 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만 해당
- 교정시설 신입수용자,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 소년보호시설 신입수용자, 휴가 복귀 군 장병(직업 군인 포함)
- 기존에 선제검사를 받아왔던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 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와 보육교직원, 기숙사 입사 학생 등은 선제검사 조정(2.3일부터)으로 선제검사대상에서 제외

2 검사시행 관련 질문

1. 아무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대상 >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 PCR 우선순위 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1.26. 15시 발급 시, 1.27. 24시까지 유효

2.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였나요?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3. PCR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PCR 검사를 받으려면 제가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임을 별도로 증명해야하나요?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로 인정 불가

○ 대상별 증빙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증빙자료에 기재된 개인 정보, 발행일자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도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사)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PCR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4.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의사가 진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유증상으로 PCR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후,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 선별진료소 상황에 따라 소속된 의사의 진찰이 가능한 경우, 해당 의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 확인 가능
 - 만약 PCR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진료와 함께 PCR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공휴일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신속 항원검사를 구매하여 검사하신 후,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우선순위 대상자입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

- ☐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6. 더 이상 무료로 PCR검사는 받지 못하나요? 유료라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과 같이 PCR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병원이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7.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 검사도 유료로 받아야 하나요?

-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8.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무엇이 다른가요?

- ☐ 전문가용과 개인용(자가검사) 신속항원검사의 원리는 동일하나, 사용하는 검체와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 검체의 종류, 검체 채취자, 검사 시행자가 달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전문가용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검체	비인두도말물 (의료인이 채취)	비강 도말물 (스스로 채취)
검사시행 주체	의료인 등 검사 전문가	개인

9. 제가 스스로 검사하는 것은 정확도가 낮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의료인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의료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낮고,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하지 못한
다던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

- ☐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에 비해 낮습니다.
- 신속항원검사의 낮은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PCR 재검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며,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 신속항원검사의 검출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신속항원검사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성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11. 노인이나 유아도 문제없이 개인용 검사를 할 수 있나요? 노약자의
검사결과로도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에 포함되어있는 설명서를 따라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검사를 보조하거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관리자 도움을 받아 검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시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실시 후, 음성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집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로 검사해도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나요?

- ☐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또는 병원·보건소 직원 또는 의료인에 의해 확인된 검사 결과만 인정됩니다.

14. 집에서 자가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제품 내 동봉된 비닐백을 사용해 양성 키트를 밀봉하신 후, 해당 키트를 지참하여 지체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검사(PCR)를 받으셔야 합니다.
- ☐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으신 후에는 자택으로 이동한 뒤,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대기를 권고드립니다.
-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하시고,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합니다.

15.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안전하게 검체 채취와 신속항원검사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안전한 검사를 위해, 병원 내에 검체 채취 및 검사수행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등), 일회용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1.27.) 참조)

16.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병원에서 PCR 검사가 가능하신 경우, 검체를 채취하여 PCR검사를 시행하시고, 해당 환자에게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하는 등 제반 사항을 안내하셔야 합니다.

- ☐ 병원에서 PCR 검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환자에게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임을 확인하는 소견서를 발급하여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 또한, 의료기관 지침*을 참고하여, 내부 환기, 검사 양성자 동선 소독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 (1.27.)

17.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키트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현장에서 검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검사희망자*에 한해, 1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된 자

○ 선별진료소 방문 없이 자택에서 검사받고자 하시는 분은 약국, 편의점 등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매하여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18. PCR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사진은 찍어놓았습니다. 이 사진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 증빙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발행일자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도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사)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19. 입원 전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별도의 서류는 주지 않고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문자를 제시해도 PCR검사가 가능한가요?

☐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한 문자도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사)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20. 휴가 후 업무에 복귀하려는 직업 군인입니다. 휴가 복귀 장병에 포함되나요?

☐ 군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휴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시면 직급에 상관 없이 모두 우선순위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PCR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휴가증 등 서류, 밀리패스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휴가증명서 등

21. 거주지가 아닌 곳에 여행을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접촉이 많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나요?

- ☐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대상자 또한,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입원환자 보호자(또는 간병인)입니다.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나요?

- ☐ 입원하는 환자 본인과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명에 대하여 입원 전 검사 1회에 한해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 입원 예정인 환자와 보호자가 동행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하셔서,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을 제출하면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 1**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신청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신청서**

검사일: _____년____월____일

[검사대상자가 작성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 번호		성별	☐ 여 ☐ 남
주소		비고	

검사 이유(1개만 선택)☐ 방역패스용(음성확인서 발급)☐ 본인 희망

※ 신청서 원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목적이 달성(시스템 입력 등)된 경우 파기

[접수처 또는 검사관리자가 작성합니다.]**검사 결과**☐ 음성 ☐ 양성 → (2차 비인두도말 PCR 시행 ☐) ☐ 지급

*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2차 PCR 검사 시행 여부 표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확인서

성 명 (성 별) : ○ ○ ○ (남,여)

생 년 월 일 : YYYY-MM-DD

검 사 일 자 : YYYY-MM-DD

검 체 종 류 : 비강도말

검 사 방 법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검 사 결 과 : 음성

※ 유효 기 간 : 검사 결과 음성 확인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상기 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보건소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발생과 유행 방지와 방역을 위한 국내용 공익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검 사 기 관 : ○ ○ ○ 보건소장

(인 또는 서명)

(TEL:00-000-0000)

서식 3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관리 대장 [보건소용]

순번	검사일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검사결과	음성 확인서 발급	비고*
1					양성, 음성	O, X	지급
2							
3							
4							
5							
6							
7							

* 현장검사 시행하지 않고, 검사 희망자에게 지급한 경우 검사결과는 표기하지 않고, 비고란에 '지급'으로 표기

서식 4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실적 제출 양식 [제출용]

(엑셀파일)

검사 날짜	시도	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실적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2차 PCR 실적		지 급 건 수 (E)
			총계		현장검사 희망자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검사 건수 (A+C+E)	양성 건수 (B+D)	검사 건수 (A)	양성 건수 (B)	검사 건수 (C)	양성 건수 (D)	검사 건수	양성 건수*	
		xxx보건소선별진료소	210	15	130	10	70	5	15	3	10

* PCR검사 양성건수는 전날 RAT 양성자의 2차 PCR 양성건수를 기재
(ex> 2.2. PCR 양성건수는 2.1.신속항원검사 양성자의 2차 PCR 검사 결과 중 양성자 수를 기재)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등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대상자는?

유전자 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외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필요자!

※ 유전자 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신속항원 ·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검사절차 및 조치

접수 및 안내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필수) 및 검사신청서 작성
※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검사이유에 '방역패스용' 체크

검체 채취 및 검사 수행

보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체(비강도말물) 채취 및 검사수행
※ 제품 사용자 설명서 참고

결과 확인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
※ 보건소 직원이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자리 이탈 금지
※ 소요시간: 15분~30분

조치

검사결과 양성 시, 유전자(PCR)검사 필수! 음성 시에도 방역수칙 준수!

○ 양성 시 조치사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유전자 검사(PCR)를 위한
검체 채취 장소로 이동

○ 음성 시 조치사항

집으로 귀가조치(필요 시 방역패스 발급)
※ 음성이라도 안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 신속항원검사 시, 주의사항

- ① 검사 등을 기다리는 동안 가능한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일정 거리두기 유지
- ② 검체 채취 외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 착용
- ③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제품에 검체 외 이물질 혼입 금지
- ④ 보건소 직원이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자리 이탈 금지

코로나19 확인검사법은 유전자 검사임. 신속항원검사로는 확진 불가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

※ 본 안내는 신속항원검사 제품의 일반적인 사용법입니다. 제품에 따라 사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별 사용설명서를 따라 정확하게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전 준비사항

- 손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립니다. *일회용 장갑 사용 권장
- 제품 구성품을 확인하고, 평편한 곳에 꺼냅니다.
- 시험단계에 따라 제품 포장지를 제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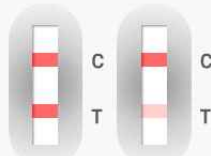
검사시 주의사항

- 제품에 검체 외 이물질(예: 침, 혈액 등)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 제품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검사반응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5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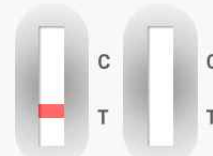
검사 결과 확인



음성 대조선(C라인)만 나타난 경우(1줄)



양성 대조선(C라인)과 시험선(T라인) 모두 나타난 경우(2줄)



무효 대조선(C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재검사 필요

검사결과 양성이면 ?

- 두 줄로 확인된 키트를 투명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지참하고,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합니다.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임을 알리고 PCR 검사(비인두도말 검체 채취)를 받습니다.
- PCR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합니다.

【이동 시 주의사항】

-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

검사결과 음성이면 ?

- 사용한 구성품을 모두 폐기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합니다.
-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합니다.
-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선별진료소 PCR검사 절차

1 우선순위 검사 대상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음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2 검사절차

- (접수) 검사 희망자가 선별진료소 방문 시, 접수 담당자는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검사 희망자의 우선순위 대상 해당 여부 확인

<증빙자료 관련 주의사항>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로 인정 불가
- 증빙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발행일자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도 증빙자료로 인정
- 증빙자료 예시에 기재된 사항 외에도, 공식 어플리케이션이나, 발급기관이 공식적으로 송부한 문자메시지 등도 인정 가능
- *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사)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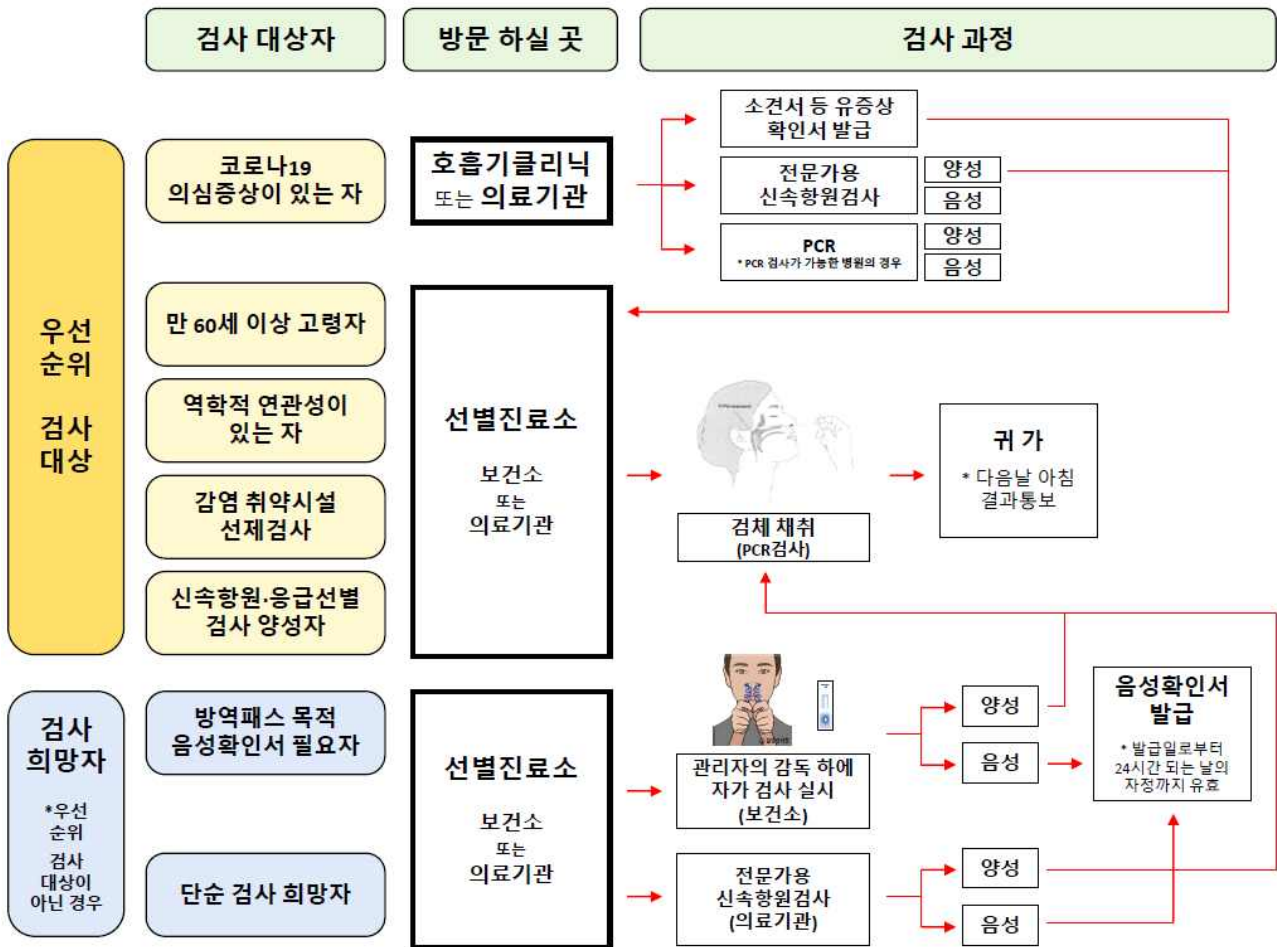
- (우선순위 대상자) 우선순위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 실시 (비인두도말 채취 → 검사의뢰)

<우선순위 검사 대상별 PCR검사 방법>

우선순위 검사 대상		PCR검사 방법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취합검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u>개별</u> 검사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u>개별</u> 검사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취합검사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취합검사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취합검사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취합검사
	휴가 복귀 장병	취합검사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취합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u>개별</u> 검사

- (우선순위 대상 외 검사회망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3] 우선순위 검사 대상별 검사절차 모식도



참고 2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운영 예시

○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운영 예시

